



노동부,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

김 상 환 |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최근 청년실업률 변동 추이는 '98년 12.2%까지 높아졌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그 이후 안정화되어 오다가 '03년부터 경기침체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8월 청년실업률은 7.3%(35만 2천 명)로서 전체 실업률 3.5%(80만 1천 명)의 2배 이상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OECD 국가의 청소년(15~24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1.9배('98~'01년 평균)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것은 개인적 좌절과 함께 고급노동력의 사장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청소년 실업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이다.

'04년 8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지표상 청년실업률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표상 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

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취업 애로층을 공식실업자(35만 2천 명)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만 6천 명)까지 포함하면 69만 3천 명(100명 중 6.8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을 수요측면에서 볼 때 첫째,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이에 따른 고용흡수력도 저하되었으며, 또한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도 하락하였다. 노동력 활용도의 직접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96년 46.2%에서 '03년 44.4%로 감소하여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율은 '97년 40.6%에서 '04년 30.0%로 감소하였다. 한편 주요기업(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의 취업자 수도 '97년 158만 1천 명에서 '04년 130만 1천 명으로 27만 1천 명 감소하였다.

둘째,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이 확산되었다.

주요 기업들이 인력채용시 신규 졸업자보다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근로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력자 채용 비중(%)은 '96년 39.6%에서 '04년 79.0%로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들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되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36.7%에서 '03년 25.2%로 점차 감소하였다.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을 공급측면에서 보면 첫째, 고학력화와 숙련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95~'03년간 대졸자가 18만 명 증가하였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 - 노동시장의 이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년층 취업경험자 중 67.4%만이 6개월 이내 첫 일자리 취업, 13.4%는 2년 이상 장기미취업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구직자가 받기를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시장임금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전체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131만원인 반면, 청년 임금근로자의 실제 평균임금은 116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5.31%로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인 하나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가구원)의 취업률이 분가하여 독립한 청년층(가구

주)의 취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남자의 취업률을 보면, 가구주인 경우는 87.2%, 가구원인 경우는 68.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 향후 2~3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여 청년(29세 이하)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00년부터 '10년까지 고령인구는 310만 명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인구는 17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청년채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장은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이다. 지원 요건은 직업안정기관 그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 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29세 이하)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이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 신청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대학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본적으로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금 지원 수준은 위 요건에 맞는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

〈표 1〉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주요 내용

| | |
|------------------|--|
|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
| 나. 지원 요건 | 직업안정기관 그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29세 이하)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①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다. 지원 수준 |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 원 (중소기업은 60만원)씩 총 12개월 지원 ※ 지원금액(연간) : 중소기업 720만 원, 대기업 540만 원 |
| 라. 실시 기간 | '0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
| 마. 기타 조건 | 사업주가 청년실업자 신규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사이에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바. 지원 근거 |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사. 채용 및 장려금 신청절차 | 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를 채용('04년 10월 이후) ② 채용 후 급여 지급 후 고용안정센터에 장려금 신청 ③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 바. 문의처 | 전국고용안정센터(1588-1919) 및 종합상담센터(1544-1350) |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 원(우선 지원대상기업 60만 원)씩 총 12개월 지원하며, 총 지원금액(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720만 원, 대기업에게 540만 원이 된다.

실시 기간은 '04년 10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04년 10월 1일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주가 청년실업자 신규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사이에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채용인원수에 따른 지원한도는 근로자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이 고용된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30%에 한하여 지원한다.

채용 및 장려금 신청절차는 ① 사업주가 직

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를 채용('04년 10월 1일 이후)하고, ② 근로자 채용 후 급여 지급하고 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 ④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이번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얻고, 청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담당: 김은혜**